대법원

대 전 지 방 법 원

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치비리솜[호반호텔앤리조트의 분할회사(구 주식회사 리솜리조트)]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

사 건 2017회합5006 회생

채 무 자 주 식 회 사 에 이 치 비 리 솜 [호 반 호 텔 앤 리 조 트 의 분 할 회 사 (구 주 식 회 사 리 솜 리 조 트)]
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204 (중장리, 리솜오션캐슬)

관 리 인 정상환
김진규

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8. 12. 28. 자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주 문
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.
2. 이유의 요지
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,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. 12. 28.

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파 산 부

재 판 장 판 사 호 제 훈

판 사 이 정 엽

판 사 조 민 혜

닫기